

창원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3나1050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3나105017 판결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. 4. 5 선고 2022가단1179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, 담당변호사 강경철

피고, 항소인 A

변론종결 2024. 3. 22.

판결선고 2024. 4. 19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. 4. 5. 선고 2022가단1179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2017. 9. 21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
통영지원 등기계 2018. 3. 29. 접수 제7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 및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
것으로 인정되므로,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
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. [추가하는 부분]

○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인 B, G, F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
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'2017. 9. 2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'으로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고,
② 피고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매수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,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
피고가 G, F에게 지급한 2,500만 원 및 B를 대신하여 H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1,800만 원의 성격을
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
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○ 설령, 피고가 B의 이 사건 부동산 1/4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,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
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제1심판결을 변경할
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

별지